

# 학위수여논문 유사도 검사 내규

2015. 4. 1. 제정

주무부서 : 대학원지원팀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90조 제5항, 제95조 제7항에 의거 본교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작성 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가 적용되는 연구물의 범위는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 제87조(학위수여)에 따른 학위수여논문으로 한다.

**제3조(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① 제2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본교 학위수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본교가 도입하여 운영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으로 자율 검사하여 「유사도 검사 등급」을 확인 후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지원팀에 학위청구논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사도 검사등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양호 수준 : 0%이상 ~ 10% 미만
2. 유의 수준 : 10%이상 ~ 15% 미만
3. 주의 수준 : 15% 이상 ~ 20% 미만
4. 위험 수준 : 20% 이상

※ 검사 결과가 30% 이상 시, 제5조 3항에 의해 졸업이 연기될 수 있음

③ 논문 검사 시에 검사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교범위 : 현재첨부분서, 도메인DB, 카피킬러 DB
2. 검사설정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목차/참고문헌 제외
3. 표절기준 :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제4조(검사 등급에 따른 자율조치)** 제3조에 따라 연구물의 유사도 검사등급을 확인한 학생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에 의한 검사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자율 조치한다.

1. 양호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검사결과를 연구물에 첨부하여 활용
2. 유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3. 주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4. 위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제3호 이하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

**제5조(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 ① 제2조 제1호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4조에 따라 자율 조치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자는 이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20%이상인 학위청구논문을 논문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별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논문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30% 이상인 경우는 논문심사위원장의 소견서를 제출과 관계없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졸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기타 논문 유사도 검사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1.]

## 학위논문 표절율 관련 소견서

심사대상	학과/전공	_____ 학과 _____ 전공	과 정	석사 / 박사
	학 번		성 명	
논문 표절율		_____ %		

논문 표절율 관련 총평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20% 이상인 경우에만 소견서를 작성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30% 이상인 경우는 논문심사위원장의 소견서를 제출과 관계없이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졸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심사위원장 (서명)  
확 인 자 : 심사위원 (서명)  
확 인 자 : 심사위원 (서명)  
확 인 자 : 심사위원 (서명)  
확 인 자 : 심사위원 (서명)  
확 인 자 : 심사위원 (서명)

※석사는  
해당인원만 작성